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82

발의연월일: 2024. 12. 6.

발 의 자:이종배·박덕흠·성일종

강승규 • 이성권 • 김성원

김형동 · 김재섭 · 엄태영

조배숙 • 이준석 • 김용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거나 조회수 · 추천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및 제73조제5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 · 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		
의 금지) ① ~ ④ (생 략)	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		
	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		
	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		
	<u>서는 아니 된다.</u>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3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u>.</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5의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u>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u>		
	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		
	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		
	작하는 행위를 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